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1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신기술지원과 이봉락 과장(02-509-7286), 박성유 연구관(010-2256-6518)		

기표원, 신제품(NEP) 인증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기술혁신형 강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강화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개발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인증신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제품(NEP) 인증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시행하였다고 밝힘

*** 신제품인증(NEP) : New Excellent Product**

○ 이는 우수한 신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증과 판로개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 현행 신제품 인증제도를 개선함.

□ 금번 제도개선은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의 강화, 비용부담의 경감 및 인증이후 지원시책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음

***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1.11.25 개정시행)**

① **(유효기간 추가연장)** 인증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 및 수입대체 파급효과가 크고 인증신제품의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추가 연장 신설

* 현행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하였으나, **추가로 3년 연장 가능**

② **(인증비용 경감)** 신제품인증 신청서류 가운데 선행기술조사서 제출의무화를 폐지하여 인증비용 절감 등 신청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 개선

* 선행기술조사서를 발급받는 데 건당 약50만원, 조사기간 약 2~3주 소요

③ **(민원사전통지제도)** 인증기업이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시기를 잊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민원사전통지제도 신설

* 신제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규정

④ **(공공구매지원요청)** 신제품 인증기업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공공구매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30일 이내 구매여부를 지경부장관에게 통보

⑤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의 제출기한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인증기업의 판로계획 수립을 지원

* 제출기한을 현행 3월말에서 2월말로 조정함

⑥ **(공공구매 대상범위)** 공공 의무구매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인증기업간의 인증신제품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유발요인을 제거

*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비율 20% 적용대상을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및 인증규격이 같은 품목으로 명확히 규정함

⑦ **(신제품인증보유 현판)** NEP 인증기업이 신제품인증 기업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대외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나 공장에 "신제품인증 보유기업" 현판을 걸어 홍보할 수 있도록 도안 요령 신설

* 현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하고, 신제품명칭, 인증번호, 유효기간 및 회사명을 표시

⑧ 이외 인증기업의 판매실적 제출시기 조정,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의 구체화 등 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

* 기업 회계감사를 고려하여 전년도 구매실적 제출시기를 1월말에서 2월말로 조정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신기술인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공공구매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판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신제품 인증제도 개요 1부.

[참고 1]

신제품(NEP) 인증제도 주요 개정내용

주요 내용	근거 조항
수출 및 수입대체 파급효과가 크고 전략적 인증보호가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신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인증기업이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시기를 잊지 않도록 신청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통지제도 신설	시행령 제20조 제5항
신제품 인증기업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시행령 제24조 제3항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의 제출기한을 현행 3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1개월 앞당김으로써 인증기업의 판로계획 수립을 지원	시행령 제27조 제1항
공공구매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인증기업간의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인식차를 해소하여 민원유발요인 제거	시행령 제23조 제1항
신제품인증 신청서류 가운데 선행기술조사서 제출의무화를 폐지하여 조사비용 절감 등 신청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
인증기업이 신제품인증기업 홍보를 위한 인증표시판 규격 신설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 신기술(NET)인증서, 산업재산권 등록증사본, 연구개발최종결과보고서, 우수발명품 선정증명서 등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
인증기업이 인증신제품의 판매실적과 자금지원 등 수혜실적 제출시기를 현행 매년 1월말에서 매년 2월말까지 제출토록 규정	운영요령* 제21조제1항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지경부고시 제2011-261호)

[참고 2]

신제품(NEP) 인증제도

1. 인증제도 개요

▣ 목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5 등

▣ 추진경위

○ '93.05.21 :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NT)인증 제도 도입

○ '95.05.10 : 제15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을 확정,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EM)제도 운영

○ '06.01.01 : 7개 인증제도 ⇒ NEP(산자부, 정통부), NET(과기부 등)

○ '08.02.28 : 정통부 IT분야 NEP인증을 지경부(기표원)로 이관, 통합수행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으로써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제품"

▣ 인증주체 : 지식경제부장관(기술표준원장 업무위임)

▣ 인증유효기간 : 3년(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인증절차(소요일수 90일)

신청서접수	⇒	인증평가 위원회 (서류면접, 현장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전문가 20인 구성)	⇒	인증서 교부
기표원		기표원		기표원		기표원

▣ 추진효과

○ NEP 인증을 통해 국내 산업제품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인증제품 판로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 연도별 인증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총 계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건수	360	120	327	98	237	64	185	59	1,109	341

▣ 인증수수료 : 없음

2. NEP인증제품 공공구매 실적

▣ NEP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2011년말 기준)

(단위 :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계
39	16	16	131	202

▣ 공공기관 NEP 제품 의무구매 실적

(단위 : 억원)

구매 금액	'07년	'08년	'09년	'10년
중앙행정기관	51	155	195	276
지방자치단체	170	526	1,121	1,324
교육자치단체	56	106	299	130
정부산하기관	1,578	1,286	1,819	1,283
합 계	**1,855**	**2,073**	**3,434**	**3,013**

* 연간 구매실적은 다음 연도 2월에 제출받기 때문에 '11년 실적은 없음
* '10년 구매실적은 NEP 인증 유효품목수의 감소로 '09년보다 감소함

▣ 2010년 NEP제품 공공기관 연도별 구매실적

(단위 : 기관, 억원, %)

구 분		'06	'07	'08	'09	'10
대상기관수		380	380	432	**196**	**200**
실적 제출	제출기관수	220	165	406	**187**	**199**
	비율	57.9	43.4	94.0	**95.4**	**99.5**
구매 금액	총구매액	5,917	3,067	3,334	**6,047**	**5,615**
	NEP구매액	2,009	1,854	2,073	**3,434**	**3,013**
	구매비율	33.9	60.4	62.2	**56.8**	**53.7**
품목대비 이행율	대상품목수	1,073	875	1,153	**1,805**	**1,362**
	이행품목수	717	623	996	**1,325**	**1,220**
	비율	66.8	71.2	86.4	**73.4**	**89.6**

▣ 공공기관 총 구매액 중 인증신제품(NEP) 구매현황(금액)

(단위 : 억원, %)

구 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계
`08	총구매액	160	606	141	2,427	**3,334**
	NEP구매액	155	526	106	1,286	**2,073**
	구매비율	96.7	86.8	75.1	53.0	**62.2**
'09	총구매액	332	2,128	452	3,135	**6,047**
	NEP구매액	195	1,121	299	1,819	**3,434**
	구매비율	58.7	52.7	66.2	58.0	**56.8**
'10	총구매액	591	2,201	329	2,494	**5,615**
	NEP구매액	276	1,324	130	1,283	**3,013**
	구매비율	46.7	60.2	39.5	51.4	**53.7**

* 연간 구매실적은 다음 연도 2월에 제출받기 때문에 '11년 실적은 없음